

전주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19가합14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으로

담당변호사 최낙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주영

피고1. A

2. B

3. C

4. D

피고 3, 4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태, 임동은

피고 3, 4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선하, 곽영수

5. E

6. F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김영복

변론 종결2021. 3. 17.

판결 선고2021. 4.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A, B과 유한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383,669,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 B,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83,669,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과 유한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체결된 매매계약을 383,669,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E, F영농조합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3,669,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7. 1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유한회사 G (이하 'G'라 한다)에게 신축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부담금 290,438,900원(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관련 채무자 G의 처분행위 등

1) G는 2016. 9. 7. 피고 A,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97794호로 2016.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 B은, 2017. 3. 29.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20분의 11 지분(피고 A, B 각 20분의 5.5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31972호로 2017.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피고 D에게 같은 부동산 중 20분의 9지분(피고 A, B 각 20분의 4.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1973호로 2017.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 관련 채무자 G의 처분행위 등

1) G는 2016. 9. 7.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97887호로 2016.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E은 2017. 9. 12. 피고 F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91653호로 2017.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 C, D, F영농조합의 본안전항변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채무자인 G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와 피고 A, B, E과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인 전주시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사를 마쳤어야 하는 2017. 3. 중순경, 또는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전주시장에게 G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에 관한 체납자료를 이관한 2017. 7. 24.경에는, 원고는 채무자인 G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 A, B,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9.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의 징수절차를 규정한 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데, 전주시장은 같은 법 제8조 제1, 2항1)에 따라 G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2)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즉 원고의 담당공무원은 채무자 G의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으로 정해진 2017. 1. 15.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마쳤어야 하므로, 적어도 2017. 1. 15.로부터 60일이 지난 2017. 3. 중순 무렵에는 위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2017. 7. 24.경 G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 체납자료를 전주시장에게 이관하였는데, 위 이관 받은 자료에는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나 결손처리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남현

판사박정련

판사김서영

별지

1)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